

별표2중 중학교(동부)의 승인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승인여자중학교”를 “승인증학교”로, 전농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전농여자중학교”를 “전일중학교”로 하고, 용마중학교란 다음에 상봉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중학교(서부)의 연희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연희여자중학교”를 “연희중학교”로 하고, 중학교(북부)의 도봉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도봉여자중학교”를 “신도봉중학교”로, 상계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상계여자중학교”를 “상계제일중학교”로 하며, 중학교(동작)의 강남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강남여자중학교”를 “강원중학교”로, 봉천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봉천여자중학교”를 “봉원중학교”로, 상도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상도여자중학교”를 “상현중학교”로 하고, 중학교(성동)의 성수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성수여자중학교”를 “성원중학교”로 하며, 중학교(성북)의 번동중학교란 다음에 수송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학교(동부)

번호	명 칭	위 치
20	상봉중학교	중랑구 상봉1동 282

중학교(성북)

번호	명 칭	위 치
12	수송중학교	강북구 번동 456

별표3중 고등학교의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의 명칭란중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혜화여자고등학교 위치란중 “종로구 혜화동 13-1”을 “강북구 수유동 468-43”으로, 동호공업고등학교 명칭란중 “동호공업고등학교”를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로,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 명칭란중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를 “서초전자고등학교”로 한다.

별표5중 특수학교의 서울정인학교란 다음에 서울정민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수학교

번호	명 칭	위 치
6	서울정민학교	노원구 하계동 153-1

별표7중 유치원(서부)의 서울금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마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남부)의 서울개봉초등학교병설

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중부) 서울명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강동)의 서울위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강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성북)의 서울삼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정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과 서울송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치원(서부)

번호	명 칭	위 치
10	서울마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포구 도화2동 347-5

유치원(남부)

번호	명 칭	위 치
10	서울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천구 시흥5동 438-5

유치원(중부)

번호	명 칭	위 치
9	서울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산구 한남2동 726-1

유치원(강동)

번호	명 칭	위 치
12	서울강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덕구 고덕2동 222

유치원(성북)

번호	명 칭	위 치
6	서울정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북구 동소문동7가 118-1
7	서울송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북구 하월곡1동 84-8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변경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체육진흥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영) ①기금은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의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를 준용하며,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